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구 분		
열람·서명자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성명 정남철 (서명)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성명 전다운 (서명)
확 인 자	정보공개담당관	성명 오경희
작 성 자	정보공개담당관 행정7급	성명 이희준

2023년 제10차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

2023. 5.

디 지 털 정 책 관

(정보공개담당관)

「2023년 제10차 정보공개심의회」 회의

〈회의개요〉

◆ 일　시 : 2023. 5. 22.(월) 16:03 ~ 17:18

◆ 장　소 : 영상회의

◆ 참　석

○ 심의위원 : 정남철, 전다운, 노승용, 이현수, 김진만

○ 배　　석 : (간사) 정보공개팀장, (서기) 이희준 주무관

◆ 안　건 : 이의신청 5건

○ (2023-37) : 2019~2023년 연도별 구매품목별 제조사, 모델명에 대한 공개청구

○ (2023-38) : 비상용보온포 구매단가에 대한 공개청구

○ (2023-39) : 행정심판 업무매뉴얼에 대한 공개 청구

○ (2023-40) : 2023년 장미꽃빛거리 프리마켓 행사 추진계획에 대한 공개청구

○ (2023-41) :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심의 의결 회의록 공개

◆ 심의결과(안건 순 배열)

○ (2023-37) : 기각 - 비공개

○ (2023-38) : 기각 - 비공개

○ (2023-39) : 기각 - 비공개

○ (2023-40) : 부분인용 - 부분공개

○ (2023-41) : 기각 - 비공개

【 의안번호 2023-37,38 이의신청 】

안건명 : 2019~2023년 연도별 구매품목별 제조사, 모델명에 대한 공개청구
비상용보온포 구매단가에 대한 공개청구

〈000 위원〉

- 의안번호 제2023-37호, 38호 강남소방서 재난관리과 소관 이의신청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000 위원〉

- 지금 비공개자료 엑셀파일 두 개 하고 PDF 파일 하나 주신 이 부분이 비공개에 해당한다라고 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 엑셀파일 보면 품명하고 구매수량, 구매단가, 그리고 계약업체명이 있는데요. 만약에 계약업체명을 삭제한다면 혹시 영업상의 비밀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을 수 있나요?

〈000 소방교〉

- 우선 이 구매건 같은 경우는 다 나라장터를 통해서 계약업체명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업체명은 공개된 사항으로 업체명을 가림처리한다고 해서 구매단가가 비공개되는 거는.

〈000 위원〉

- 그러면 여기 주신 엑셀파일 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자료가 있고, 2023년 보니까 2023-1 해서 올해는 하나만 아마 있는가 봅니다.

  이 2022년 같은 경우 5개의 파일이 있던데 그러면 이 나라장터에 공개가 다 돼 있어서 그 매칭이 전부 다 하나하나씩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000 소방교〉

- 네, 가능합니다. 나라장터를 통해서 그 해당 건들을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000 위원〉

- 여기 주신 2022-5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 경우 만약에 4분기 구급소모품 구매라는 부분 삭제하고 계약업체명 삭제를 해도 이게 4분기 구급소모품이고 어떤 업체를 통해서 구매했다 하는 걸 다 알 수 있다는 의미이신 건가요?

〈000 소방교〉

- 나라장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예를 들어서 4분기 구급소모품 구매라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검색을 하게 되면 그 건에 대한 계약업체명 이런 거를 다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000 위원〉

- 2022-4 파일 같은 경우 ′22년 하반기 구급소모성 기초장비구매인데 그 문구를 제외하고, 계약업체명도 제외하고 그러면 이 엑셀파일이 이게 하반기인지 4분기인지 이걸 알 수가 있는 건가요?

〈000 소방교〉

- 다 가림처리를 하게 되면 이게 어떤 계약에 대한 건인지 알 수는 없으나 지금 여기서 비공개한 사항을 그 업체의 개별 물건에 대한 단가를 비공개한 거기 때문에요.

〈000 위원〉

- 그러면 2022년의 경우도 파악이 가능한 건가요? 뭐 ′23년이야 1번이니까 그럴 수 있지만 ′22년 같은 경우는 5번 있으신 것 같은데 5번 각각을 다 일대일로 매칭이 가능한가요?

〈000 주무관〉

- 지금 000 반장님이 말씀했던 나라장터를 통해서 공개되는 내용이 공통적으로 계약일자, 기간, 금액, 업체 이런 것들은 이미 공개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강남소방서 같은 경우에 2022년이 5건이라도 회차별 어떤 업체랑 계약을 했는지 이미 공개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업체명을 가리고 나간다고 하더라도 그 업체와 현재 우리가 계약건에 대한 단가는 다 매칭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000 위원〉

- 업체명과 회차를 다 가렸어도 이번 어떤 특정 회차가 어디에 해당한다는 걸 알 수 있는 건가요?

〈000 주무관〉

- 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회차랑 업체명은 이미 공개가 된 상황입니다. 단가랑 품목명만 공개가 안 된 상황이에요.

〈000 위원〉

- 파일에서도 이게 몇 회차이다라고 하는 걸 표기하지 않으면 그쪽에서 이게 몇 회차인지 알 수 있을까요?

〈000 주무관〉

- 금액 부분이랑 품목이랑 단가를 합산만 하면 총합계 금액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계약건이 다 동일한 금액이 아니라서 총금액만 보면 어떤 단가를 어떻게 구매했는지 매칭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청구인분이 원하는 내용이 지금 모든 건에 대한 단가를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지금 이미 다른 부분은 거의 다 알고 계신 것이라서, 저희가 단가를 공개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청구와 관련해서 상대방 업체에 문의를 한 결과 공개하기를 원치 않았어요.

〈000 위원〉

- 혹시 다른 위원님들 질문 있으시면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000 위원〉

- 그러면 나라장터에 공개된 내용은 예를 들어 몇 회차 구급소모품이라고 해서 총액이 표시가 되는 건가요? 품명까지도 혹시 공개가 되는 건가요?

〈000 주무관〉

- 나라장터에 공개되는 서식에는 일자랑 예정가격, 계약금액, 총액, 계약률이 몇 퍼센트로 체결이 되었는지, 업체명, 대표자, 주소 그리고 사유 이렇게까지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품목하고 단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000 위원〉

- 그리고 비공개 사유로 5호, 7호를 말씀해 주셨는데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더라도 이게 공개될 경우에 업체한테 어떠한 현저한 불이익이나 뭔가 부당한 침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을까요?

〈000 주무관〉

- 이전에 똑같은 정보공개이행청구 관련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행정심판이 있었는데요. 2014년 10월 21일 사례를 보면 여기서도 상대방 업체에서 체결한 품목에 대한 단가를 공개하는 그런 똑같은 동일한 내용의 행정심판이었는데, 여기서도 개별 단가는 공개될 경우 향후 해당 업체들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다 등등의, 단가를 공개하는 거는 영업의 비밀이다라는 내용의 그런 취지의 사전 판례가 있었습니다.

〈000 위원〉

- 안건이 각각 의결을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좀 관련성이 있어서 한꺼번에 저희가 하고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3-38호 안건에 대해서도 주심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십시오. 혹시 뭐 추가로 이 건 관련해서.

〈000 위원〉

- 앞서 이야기가 다 되었습니다.

〈000 위원〉

- 아마 내역서에 보시면 비상용 보온포 단가에 관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두 건 다 저희가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추가질문 없으시지요? 두 건 다 의결한 다음에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가 계시기 바랍니다.

(소관부서 팀장, 담당자 퇴장)

먼저 주심위원님 의견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000 위원〉

-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로 보면 충분히 어떤 업체가 어떤 품목을 몇 개나 그리고 얼마에 이렇게 납품했는지라고 하는 것의 파악이 가능할 듯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공개하는 걸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00 위원〉

- 그러면 기각 의견이시고요.

그런데 이게 비공개 사유가 영업상 비밀로 해서 7호에 해당이 되는 건 분명한데, 저희가 5호도 함께 비공개 사유로 봐야 할까요? 여기 보면 입찰에 관한 것도 포함이 되고 있는데 이게 공개되면 차후에 입찰관계에서도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어서 5호도 같이 비공개 사유로 보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000 위원〉

- 저도 이게 정보를 알면 앞으로 조달청 나라장터에 입찰할 때 자기가 가격을 어느 정도로 이렇게 할지 등을 아마 알 수는 있을 것 같아서요.

〈000 위원〉

- 000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000 위원〉

- 그런데 일단 사유 5호가 이게 입찰계약에 관한 사항이라고 보기에는, 그러니까 장래의 입찰계약이 아니라 이 건은 수의계약에 관한 정보여서 저는 5호는 해당 안 된다는 의견이고요. 7호만 문제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000 위원〉

- 5호 사유는 제외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좋습니다. 기각 의견 주셨고요. 000 위원님.

〈000 위원, 000 위원〉

- 저도 주심위원님처럼 기각 의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비공개 사유는 7호로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도 말씀드립니다.

〈000 위원〉

- 그러면 저도 명확히 그냥 7호로 비공개 사유로 하고요. 기각 의견으로 의견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두 건 다 동일하게 이렇게 의결한 것으로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부서 입장, 담당자 입장)

이게 지금 관련 안건이라 병합을 하기는 하였으나 의결은 각각 따로 하고요.

의결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집계결과 참석위원 5명 중 5명이 이의신청건을 기각한다는 의견입니다. 두 건 다 기각 의견이고요.

의안번호 제2023-37호에 대해서 기각 결정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023-37호는 “기각” 결정됐음을 선포합니다.

마찬가지로 의안번호 제2023-38호 안건 의결사항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안건에 대해서도 기각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023-38호건도 “기각”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안번호 2023-39 이의신청 】
안건명 : 행정심판 업무매뉴얼에 대한 공개 청구

〈000 위원〉

- 두 번째 안건 상정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3-39호 법무담당관 소관 이의신청건을 상정합니다.

〈000 위원〉

- 팀장님 주무관님, 제가 보내주신 자료 읽다 보니까 궁금한 점이 몇 개 있어서 질문하려고 하는데요. 이 정보공개청구 대상정보가 서울시 행정심판 업무매뉴얼이던데요. 혹시 이 업무매뉴얼은 언제부터 서울시에서 만드셨나요?

〈000 주무관〉

- 시작연도는 제가 그것까지 파악을 못 했고요. 이게 매년 만들지는 않았고, 이게 주기적으로 큰 변동사항이 있을 때 그때그때 좀 상시적으로 만들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000 위원〉

- 2021년 버전을 제출을 해 주셨던데요. 이거 만든 다음에 사무실에 비치해 놓고 직원분들만 보시나요, 아니면 행정심판 위원으로 위촉되신 분들에게도 한 부씩 배부를 하시나요?

〈000 팀장〉

- 일단 직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비치를 해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위원님들께는 필요하실 때 심판과정에서 행정업무들이라든지 위원회 운영에 관한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필요하신 부분이 있어서 찾으실 때 저희들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000 위원〉

- 그러면 이렇게 업무매뉴얼 책자건 파일이건 외부위원들께 보여드릴, 이렇게 통째로 제공하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까?

〈000 팀장〉

- 외부에 제공하지는 않았습니다.

〈000 위원〉

-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궁금하게 생각되는 건 이 업무매뉴얼 보내주신 파일을 보니까 대외비라고 적혀져 있는데요. 혹시 서울시에서 문서정보 이런 거 관리하실 때 비밀 지정을 하는 근거규정이 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000 팀장〉

- 저희가 대외비를 규정하고 있는 총괄규정을 확인하지는 못했고요. 이게 ′21년도 제작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통 부서에서 대외적 유출을 방지하고자 주의하는 차원에서 대외비로 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000 위원〉

- 또 하나 궁금하게 생각되었던 게 매뉴얼을 열어서 그 내용을 보면 감경기준, 이라든지 업무정지하지 않고 과징금으로 이렇게 부과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라든지 이런 거 적어놓으셨더라고요. 감경기준, 그다음에 행정심판 사건 접수해서부터 재결서 쓸 때까지의 그 절차, 또 재결서 작성방법 그다음에 사건 유형별 고려사항 이런 게 대개 이 매뉴얼에 담겨져 있던데요.

  이 매뉴얼 내용 중에 특히나 절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내용은 뭐가 있을까요?

〈000 팀장〉

- 일단은 외부에 공개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일단 저희들이 많이 청구가 들어오고 있는 장애판정 사건에 대해서 자문병원 리스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공개가 되면 곤란한 상황일 것 같고요.

  사실 저희들이 좀 염려하는 부분들은 말씀하셨듯이 감경기준이라든지 각종 절차들이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게 ′21년도에 만들어지고 ′22년, ′23년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매뉴얼에 대해서도 실무적인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이런 매뉴얼대로의 어떤 자료가 공개됐을 경우에 현재 상태하고 달라진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시민들이 오해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감경기준이라든지 재결서를 작성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현재 다른 부분들이 있고, 실제도 감경기준이 외부에 노출이 되었을 때 이 부분이 또 악용될 소지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부분들도 좀 염려하고 있습니다.

〈000 위원〉

-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시도 행심의 경우에 시도별로 다 이런 행정심판 업무매뉴얼들을 갖추고 계신지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행정심판 업무매뉴얼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인용이나 혹은 부분인용이나 된 사례가 있다고 알고 계시나요?

〈000 팀장〉

- 제가 알기로는 모든 시도가 매뉴얼을 어떤 형태로 만들고 있는지는 저희들도 확인해 보지는 못했고요.

  판례나 재결례를 통해서도 이런 매뉴얼이 공개된 사례를 제가 들어본 적은 현재로서는 없거든요.

〈000 위원〉

- 이 자료 중에 공개했을 때 업무 저해성이 있다고 말씀하신 대표적인 게 감경기준인데 맞나요?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본 결과는 이거 감경기준은 다 이미 법령에 있는 것이고, 감경기준이 왜 시민에게 공개가 되어서는 안 되는지가 잘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이게 왜 비공개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000 팀장〉

- 감경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감경기준도 있고요. 현재 감경기준을 조금 재검토를 저희가 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그러면 이 감경기준이 그대로 또 다 받아들여진다고 하기에는 앞으로도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000 위원〉

-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PDF 128페이지를 예시로 보시면 감경기준이 이미 시행령, 시행 규칙, 별표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이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행정심판보다 더 엄격한 법원의 형사재판에서도 양형기준은 다 공개가 되거든요. 더 엄격한 법원절차에서도 공개가 되는데 왜 여기서 안 돼야 될지 그 사유가 궁금했고요.

〈000 팀장〉

- 저희들이 지금 행정심판위원회 위원님들과 현재의 감경기준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다시 또 검토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결과가 나왔을 때 또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000 위원〉

- 혹시 이거 말고 또 뭔가 공개됐을 때 업무 저해될 게 우려되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000 팀장〉

- 아까 우려되는 부분들 같이 말씀드린 내용들 중에 지금 행정심판이 접수되고부터 재결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들을 이렇게 다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 업무담당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그런데 이 업무절차 중에 자금은 이행이 되지 않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불필요한 오해를 발생시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장애판정 사건도 자문위원 리스트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소신 있는 장애판정에 대한 자문의견을 구할 때 업무상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 186페이지를 보시면 자문병원 리스트가 있거든요.

〈000 위원〉

- 알겠습니다.

〈000 위원〉

- 다른 추가질문 사항이 없으시면 질의를 마무리하고 일단 토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은 잠깐 나가계시고요. 다 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관부서 팀장, 주무관 퇴장)

000 위원님, 먼저 의견 주십시오.

〈000 위원〉

- 이 문제의 매뉴얼이 거의 200페이지에 육박하는 많은 양인데요. 이 매뉴얼을 하나하나 열어보기 시작하면 일반적으로 그냥 행정심판에 대해서 소개하고 또 법령에 정해진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엄격하게 생각을 하면 정보공개법에서 공개 가능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섞여 있을 때 부분공개를 되도록이면 하는 그게 정보공개법의 기본 취지라고 저는 생각은 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일일이 다 200페이지 넘는 걸 가능한 부분과 가능하지 않은 부분으로 쪼개서 공개를 할 필요가 과연 있을까 하는 생각도 저는 들거든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저는 이거 전체적으로 그냥 비공개, 업무매뉴얼의 성질상 공개되는 게 적절치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5호 사유에 의한 비공개 의견 말씀드리고요.

이 매뉴얼은 재결이라고 하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참고하는 일종의 자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우리 판례도 이렇게 의사결정 과정에서 제공되는 자료 역시 5호 소정의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보고 있어서 5호를 근거로 해서 비공개하는 의견 말씀드립니다.

〈000 위원〉

- 기각 의견 주셨습니다. 000 위원님.

〈000 위원〉

- 사실 업무매뉴얼이라는 거의 성격상 저는 비공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구체적으로 좀 질의답변을 들어보니까 이게 비공개 사유가 있는 부분이 많이 확인이 안 되고, 사실 그리고 구분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원칙적으로 공개로 가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일부 확실히 공개 가능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구분이 안 된다고 해서 통째로 비공개하는 거는 우리 법 취지에 좀 맞지 않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5호를 적용하기에는 감사, 감독, 검사, 시험 쪽이 들어가는지가 좀 애매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내용은 또 아닌 것 같고 그래서 5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게 아직 소명이 안 된 것 같아서 그래서 저도 조금 매뉴얼이라는 것 자체가 비공개 성격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건에서 좀 소명이 안 돼서 이의신청 인용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000 위원〉

- 인용이시고요. 아까 병원 기록이나 이런 거 다 포함해서 다 공개해도 괜찮다는 말씀이시지요?

〈000 위원〉

- 그런데 병원 부분 그거는 따로 공개되지 않는 정보겠지요, 서울시에서? 그걸 제가 정확히 몰라서 그 장애등급 확인할 때 자문받는 병원이 일반적으로 공개가 되는 정보인지 그거를. 그게 비공개라면 그 부분은 비공개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00 위원〉

- 그러면 부분인용이시지요? 병원 기록만 제외하고요.

〈000 위원〉

- 네.

〈000 위원〉

- 취지는 알겠습니다. 000 위원님.

〈000 위원〉

- 사실 저도 000 위원님 의견과 비슷하게 또 일부는 비공개 부분이 있을 듯한데 또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많이 있고 해서요. 아마 000 위원님께서도 그런 고민을 하셨던 것 같고, 그걸 다 구별해내기 어려우니까 그냥 비공개할 부분들이 일부 있어서 그렇게 의견을 주신 것 같은데요. 어떻게 결정을 내려야 될까요?

〈000 위원〉

- 여러 위원님께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기는 한데요. 행정심판은 굉장히 민감한 이해관계가 이렇게 다뤄지는 부분이 크고 해서 여기 보면 여러 가지 감경기준이나 내부 처리절차라든지 재결서 작성방법 이런 것들을 사전에 사건 의뢰인이 인지를 하게 되면 안 좋은 쪽으로 악용이 될 가능성이 조금 커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비공개로 대외비로 이렇게 한 취지가 있는 거구요.

  일부 뭐 이렇게 공개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고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어떨까 저는 그런 의견을 좀 드려봅니다.

〈000 위원〉

- 000 위원님은 아직 조금 확답을 주시지는 않았는데요. 저도 매뉴얼 내용을 보면 그냥 일반인도 알아도 될 만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렇기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지금 내부적인 규정이잖아요. 행정사무라는 게 대부분 재량으로 돼 있고, 또 이런 제재를 하는 내용들이 다 재량의 성격이 있는데 법령에서는 분명히 아우트라인이 있어서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꼭 공포라든가 이런 방식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게 사실 막 섞여 있는데 이걸 하나하나 지금, 아까 우리 000 위원님도 공개는 해야 된다고 보시면서도 일부는 또 비공개 내용도 섞여 있어서 이걸 다 분류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만약에 공개됐을 때, 아까 청구인의 지금 케이스도 그러하지만 대부분 이게 공개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처분 자체만 가지고도 소송으로 나아갔을 때 그 자체의 어떤 비례원칙이나 평등원칙을 따져서도 충분히 그 위법 사유는 파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권리구제에 있어서 크게 문제될 거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소 이게 일반적인 절차, 프로세싱 이런 거는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기는 한데 여기 군데군데 섞여 있는 행정업무의 노하우 같은 게 있어서 이런 것들이 조금 공개되기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이걸 분류하기가 쉽지 않다는 게 이 사건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사건은 기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제 의견은 말씀을 드렸고요. 세 분이 지금 기각 의견을 주셨고요. 한 분 000 위원님께서는,

〈000 위원〉

- 저도 그러면 기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00 위원〉

- 그러면 이렇게 저희가 의결하기로 하고 비공개 사유는 5호로 해야 될거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은 대부분 행정심판 운영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5호로 보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로 이견이 없으시면 그렇게 지금 의결을 하도록 하고 담당자님들 들어오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부서 팀장, 주무관 입장)

저희 의결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집계결과 참석위원 5명 중 4명이 이의신청건을 기각한다는 의견입니다.

내용 중에 그런 사항이 있기는 있지만 아직 좀 매뉴얼 특성상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고, 비공개 공개를 구분하기도 쉽지 않은 현실적인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결정하였습니다. 추후에 매뉴얼을 잘 정비하셔서 이런 문제점을 잘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본 안건을 기각 결정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023-39호는 “기각”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안번호 2023-40 이의신청 】
안건명 : 2023년 장미꽃빛거리 프리마켓 행사 추진계획에 대한 공개청구

〈000 위원〉

- 세 번째 안건 상정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3-40호 중랑소방서 재난관리과 소관 이의신청건을 상정합니다.

〈000 위원〉

-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행사 추진계획이 문서 제목인데 이 행사계획은 확정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날짜, 회차 중에 사실 이미 다 진행이 완료된 것도 있는데 이 계획 자체는 확정된 게 맞나요?

〈000 소방장〉

- 지금 계획 자체는 확정돼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작년 이태원 사건 이후로 자치구에서 추진하는 행사나 축제 관련해서는 자치구뿐만 아니고 소방이나 경찰에서 안전대책을 수립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랑구청에서 장미꽃빛거리 프리마켓 행사를 개최하면서 저희 중랑소방서 쪽에 안전관리 차원에서 협조를 요청을 했었고, 이 해당 비공개 문서를 저희의 첨부파일로 제공해서 저희도 소방안전대책을 세우면서 출동 소방대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이 파일을 첨부한 상태였는데, 그러니까 비공개 파일을 해당 정보공개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요청한 사안입니다.

〈000 위원〉

- 일단 서울시가 이걸 보관하고 있는 게 문제가 되는 건 전혀 아니고, 그리고 제3자 작성문서라도 서울시가 보관하고 있는 건 다 청구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요. 그거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성 당사자가 아니어서 사실 모르실 수도 있기는 한데 이게 공개될 경우에 이 행사를 진행하는 데에 어떤 장애나 문제가 생긴다는 것인지 그게 핵심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혹시 들으신 게 있는지.

  제가 여기 중랑구에서 보낸 의견서는 보기는 했는데 그렇게 소명이 잘 되어 있지 않아서, 이미 이게 확정된 계획이고 작년에도 이미 여섯 번이나 진행됐던 행사이고 이렇게 정기적으로 계속하는데 이게 공개될 경우에 어떤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것인지가 좀 궁금합니다. 혹시 아시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000 소방장〉

- 저도 중랑구청에 이 해당 문서를 기한한 담당자랑 통화를 해서 내용을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는데요. 정보공개청구한 청구인이 프리마켓 행사 관련해서 약간 중랑구청이랑,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이해관계가 약간 얽혀 있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그쪽에서 요청한 사항은 문서 기안한 담당자 이름, 그리고 주최자 협동조합이 어디인가 그런 명칭 같은 거를 만약에 공개할 경우에는 부분공개를 해달라고 해 주셨었습니다.

〈000 위원〉

- 그거는 저희가 판단하면 될 것 같고요.

  이 주최 협동조합 이름을 비공개 요청하신... 혹시 밑에 이거 소요예산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 없으셨나요?

〈000 소방장〉

- 그것까지는 말씀 없으셨는데요.

〈000 위원〉

- 알겠습니다. 저는 질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000 위원〉

- 다른 위원님들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000 위원님.

〈000 위원〉

- 프리마켓 행사 추진계획에 굳이 그런 아까 담당자 기안한 이름이라든지 주최자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그거를 가리면 그 외의 내용들은 굳이 공개 안 할 이유가 굳이 있나싶습니다. 일반적인 내용인 것 같은데요. 오히려 이런 행사는 홍보를 더 해야 되는 경우 아닌가요?

〈000 소방장〉

-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이게 행사 주최하는 담당자가 아니다 보니까요. 그런데 정보공개청구한 청구인이랑 중랑구청이랑 뭔가 이해관계가 약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공개 요청을 자꾸 저희 쪽에 했기 때문에 저희가 비공개를 했습니다.

〈000 위원〉

- 그러면 일단 추가질문이 없는 것으로 보고 일단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고 저희가 토의를 진행해서 의결한 다음에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나가셨다가 들어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관부서 소방장 퇴장)

000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000 위원〉

- 저는 부분인용으로 3페이지 밑에 예산 부분만 빼고 공개하는 것으로 의견 드리겠습니다. 협동조합명을 검색해 보니까 이 행사포스터 같은 데 이미 나오더라고요. 오히려 크게 이거 장상추 협동조합이다 이렇게 해서 이런 행사를 개최한다고 지역신문에도 나오고 그랬던 것이어서 저도 그것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예산 한 페이지와 그리고 6페이지 맡에도 소요예산이 한 번 더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 두 가지만 가리면

〈000 위원〉

- 6페이지요? 아, 여기 소요예산 3페이지, 6페이지 다.

〈000 위원〉

- 그거 제외하고, 공무원도 괜찮으니까 그렇게 부분공개 의견 드리겠습니다.

〈000 위원〉

- 000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000 위원, 000 위원, 000 위원〉

- 저는 주심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000 위원〉

- 저도 주심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담당 중랑소방서의 담당자님 들어오라고 해 주십시오.

(소관부서 소방장 입장)

저희의 의결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부분인용 결정을 내렸는데요.

집계결과 참석위원 5명 중 5명이 이의신청건을 부분인용한다는 의견입니다.

이 중에서 3페이지에 소요예산 부분하고, 6페이지에 보면 소요예산이 있습니다.

이 부분만 가리고 나머지는 공개하는 걸로 이렇게 의결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부분인용 결정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023-40호는 “부분인용”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안번호 2023-41 이의신청 】
안건명 :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심의 의결 회의록 공개

〈000 위원〉
- 마지막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3-41호 조사담당관 소관 이의신청건을 상정합니다.

〈000 위원〉
- 두 분이 나와 주셨고요. 본 안건은 제가 주심위원으로 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공익제보와 관련된 사항이고요. 청구한 대상은 공익제보 지원위원회 심의의결 회의록입니다.

지금 근거로서 5호를 제시해 주셨는데 이 안건은 이미 의결이 된 거 아닙니까?

〈000 주무관〉
- 네, 심의의결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000 위원〉
- 완료가 됐으니까 이게 지금 5호에 해당된다고 보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의결된 사항은 공개하는 게 원칙이니까요.

그런데 여기 지금 이 회의록과 관련해서 보시면 이분이 아마 공익제보를 여러 건을 하신 것 같고, 그중에 하나는 포상금만 200만 원인가 지급결정이 된 거고, 또 다른 건은 무단용도 어린이대공원 시설 관련된 거는 보류된 사항. 이거와 관련된 회의록을 청구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회의록 비공개 결정을 내렸을 때, 이게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비공개 사유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12조 여기에 공익신고자 등의 비밀보장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자세히 보면 일단 대부분은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는 규정인데 공익신고자 등이라고 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정의 규정 중에 제5호를 보시면 공익신고에 관한 조사, 수사, 소송 등등 이런

진술, 증언, 자료제공 이에 관련된 사항들도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서울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시면 여기에도 약간 유사한 규정이 있는데요. 공익제보자와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보장에 관한 내용이 있고, 조례 9조 1항 단서를 보면 공익제보와 관련하여 조사 등에 협조한 사람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익신고자뿐만 아니라 이런 회의에 관련된 분들, 또는 그 회의록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다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공개 대상 사유를 제5호가 아니라 1호로 보셔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공개 사유는 잘못된 것이고, 1호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00 주무관〉

-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신 부분이 있으신 것 같고요. 저희도 일단은 근거나 안건상정요청서에 제시를 한 의견처럼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참고인의 의견과 수사기관의 수사내용 등이 일체 포함되어 있는 심의 의결 내용 전체이다 보니까 일단은 9조 1항 5호로 저희가 잘못 제시한 부분입니다. 추가적으로 9조 1항 1호를 근거로 해서 하는 부분이 더 타당하다는 판단이 듭니다.

〈000 위원〉

- 일단 회의록 내용 자체는 보면 비공개로 이런 걸 다 익명으로 이렇게 하시기는 하였으나 그 내용들이 쭉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익제보와 관련된 내용들이 있고, 이러한 것을 공개하는 것은 또 징계사유가 될 수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1호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분은 지금 말씀드린 이 사안과 관련된 두 가지 건 전부 다 해당이 되는 것이지요. 포상금과 관련된 것하고 무단 용도변경 둘 다 관련이 있습니까?

〈000 주무관〉

- 그렇습니다.

〈000 위원〉

- 혹시 추가 질문사항이 있으신지요?

저희가 추가 질문사항이 없으면 질의를 일단 마무리하고 토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분은 잠깐 나가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부서 주무관 퇴장)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일단 먼저 의견을 드리자면 비공개 사유만 1호로 해서 비공개 결정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각 의견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000 위원, 000 위원, 000 위원, 000 위원〉

- 저도 위원장님 의견과 같습니다.

〈000 위원〉

- 감사합니다. 그러면 일단 의결이 되었기 때문에 담당 주무관님들 들어오라고 하십시오.

(소관부서 주무관 입장)

저희 의결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계결과 참석위원 5명 중 5명이 이의신청건을 기각한다는 의견이므로 본 안건을 기각 결정코자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공개 사유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 등에 근거해서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1호에 따라서 비공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신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023-41호는 “기각” 결정됐음을 선포합니다.